

#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5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 5. 27.
4. 회부일자 : 2024. 5. 30.

### II. 제안이유

-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을 반영하고,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촉진을 위한 2024년도 시설비 지출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1. (2023년도 말 조성액) 총 46,692,524천원 증가

-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 반영

(단위: 천원)

기정(A)	변경 내역(B)			증감 (C=B-A)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 ①	이월금 ②	소계 (③=①+②)	
93,468,460	133,463,502	6,697,482	140,160,984	46,692,524

## 2. (지출계획) 총 31,498,782천원 증가

-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촉진을 위한 2024년도 시설비(공사비 및 관급자재) 지출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 반영

(단위: 천원)

기정(A)	변경 내역(B)			변경 후 지출계획 (C=A+B)
	시설비 증액 ①	이월금 ②	소계 (③=①+②)	
41,799,993	24,801,300	6,697,482	31,498,782	73,298,775

## 3.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변경(A)	기정(B)	증감 (C=A-B)	항목	변경(A)	기정(B)	증감 (C=A-B)	증감율 (D=C/B)
합계	135,417,310	95,422,268	39,995,042	합계	135,417,310	95,422,268	39,995,042	41.91%
예치금 회수	133,463,502	93,468,460	39,995,042	비용자성 사업비	66,601,293	41,799,993	24,801,300	59.33%
이자수입	1,953,808	1,953,808	-	예치금	68,816,017	53,622,275	15,193,742	28.33%

##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50호로 제출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3).

---

1) 금년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기금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변경되었음.

2)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

- 따라서 동 변경안 중 지출계획에서 ‘기관운영(비용자성사업비)’ 가 당초 지출계획금액 418억원에서 666억 1백만원으로 248억 1백만원(59.3%)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예치금)’ 은 당초 지출계획금액 536억 2천 2백만원에서 688억 1천 6백만원으로 151억 9천 4백만원(28.3%) 증가하였는바,

동 변경안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표-1] 신청사 건립 기금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수입항목	수 입 계 획			지출항목 (정책사업)	지 출 계 획		
	'24년 수입액 변경 (A)	'24년 수입액 기정 (B)	증 감 (C=A-B)		'24년 지출액 변경 (A)	'24년 지출액 기정 (B)	증 감 (C=A-B)
합 계	135,417,310	95,422,268	39,995,042	합 계	135,417,310	95,422,268	39,995,042
예치금 회수	133,463,502	93,468,460	39,995,042	비용자성 사업비 (기관운영)	66,601,293	41,799,993	24,801,300
이자수입	1,953,808	1,953,808	0	예치금 (재무활동)	68,816,017	53,622,275	15,193,742

- 이와 같이 2개의 정책사업에서 지출계획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액 반영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수입계획금액 934억 6천 8백만원에서 1,334억 6천 3백만원으로 399억 9천 5백만원(42.8%) 증가하였음.

- 이처럼 큰 폭의 예치금 회수액 증가는 2023년 ‘기관운영(비용자성사업비)’ 의 낮은 집행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생 략>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으로 ‘기관운영(비용자성사업비)’ 의 당초 지출계획현액 554억 7천 4백만원의 12.3%인 68억 2천 7백만원만을 지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표-2] 2023년 ‘기관운영’ 지출 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지출계획 금액 (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D)	다음연도 이월액(E)	집행잔액 (F=C-D-E)
설계비	13,784	0	13,784	0	0	13,784
시설비	36,126,704	17,717,532	53,844,236	6,799,305	5,817,258	41,227,673
감리비	1,471,000	0	1,471,000	0	880,224	590,776
부대비	144,826	0	144,826	27,348	0	117,478
합계	37,756,314	17,717,532	55,473,846	6,826,653	6,697,482	41,949,711

○ 그러나 오염토는 2022년 12월에 발생하였고 2023년 4월에 오염토 반출 정화공사가 실시되었는바(공사기간 1년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순차적 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대규모 불용 발생을 2023년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에 동 기금 운용계획안을 크게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조정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 이는 동 기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운용 및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져 온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동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적정한 지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의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금번 변경안에서 공정률 상승에 따른 공사 촉진을 위해 ‘기관운영(비용자성사업비)’ 의 시설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바, 신청사 건립 추

진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기금의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